



대 구 지 방 법 원

제 2 - 2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24노2671 재물손괴, 절도
피 고 인 A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문성은(기소), 전우석(공판)
원 심 판 결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24. 7. 4. 선고 2023고정141 판결
판 결 선 고 2025. 7. 11.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재물손괴죄에 대하여(법리오해)

1) 이 사건에서처럼 CCTV 자체를 훼손함이 없이 카메라의 각도만을 돌려놓아 원래 촬영하고 있던 장소가 촬영되지 않도록 하는 것일 뿐인 행위는 재물손괴죄에 해당



하지 않는다. 비슷한 사안에 대하여 대구지방법원 2021노2487 판결에서도 그 같은 취지로 무죄를 선고하였는데, 이 판결은 대법원에서 검사의 상고가 기각되어 그대로 확정되었다.

2) 피해자들(임대인 겸 원룸 전체 건물 관리인)이 피고인으로부터 승낙을 받지 않고 피고인을 감시하기 위하여 CCTV를 설치한 것이어서 그 같은 설치 자체가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위반되는 행위이다. 따라서 그 카메라 각도를 바꾸어 CCTV로 피고인을 감시하지 못하도록 했을 뿐인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처벌할 수 없다.

나. 절도죄에 대하여(사실오인)

피고인은 옥상 창고에 있던 CCTV 셋탑박스(CCTV로 촬영된 영상이 녹화되어 기록되는 정보저장장치)를 절취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이 2023. 9. 4.에 경찰관 입회하에 옥상 창고에 숨겨져 있던 CCTV 셋탑박스를 찾아 피해자측에 반환한 사실도 있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재물손괴죄에 대하여

1) 형법 제366조의 재물손괴죄는 타인의 재물을 손괴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는 경우에 성립한다. 여기에서 재물의 효용을 해한다고 함은 사실상으로나 감정상으로 재물을 본래의 사용 목적에 제공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을 말하고, 일시적으로 재물을 이용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도 포함한다(대법원 2020. 3. 27. 선고 2017도20455 판결). 피고인은 이 사건 5층과 옥상에 설치되어 피고인 거주 원룸(E호)의 현관 출입문과 옥상으로 통하는 계단 부위를 촬영하고 있던 CCTV의 카메라 방향을 돌려놓아 이를 설치한 사람(피해자)이 애초에 감시하며 촬영하



고자 하던 부분을 감시·촬영할 수 없도록 만들었다. 이는 일시적인 것이기는 하나, 재물을 본래의 사용 목적에 제공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임이 분명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재물손괴죄에 해당한다. 피고인이 들고 있는 대구지방법원 2021노2487 판결(대법원 22도9472 판결로 검사의 상고가 기각됨)은 CCTV 카메라에 직접 접촉함이 없이 CCTV 카메라와 촬영 방면 사이에 있던 창문 유리에 종이를 붙여 시야를 가려 CCTV 촬영을 방해한 경우에 대한 판결이어서 그 경우가 다른 이 사건에 적용될 수 있는 판결이 아니다. 피고인의 행위가 재물손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이 사건 CCTV는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에 해당한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등에 의하면, 범죄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나 시설의 안전 및 관리, 화재 예방을 위하여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가 그 목적을 위해서만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를 설치·운영할 수 있고, 이 경우에도 정보주체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설치 목적 및 장소나 촬영 범위 및 시간 등이 포함된 안내판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CCTV 중 5층에 설치된 것은 바로 피고인이 거주하는 원룸(E호)의 출입현관문 부위만을 감시·촬영하도록 되어 있었고, 옥상에 이르는 계단 위쪽에 설치된 것 역시 그 계단 아래쪽에 쌓여 있던 피고인 소유의 짐 부분을 감시·촬영하도록 되어 있었다. 5층에는 3가구의 원룸(E호, L호, M호)이 있었는데 유독 피고인 거주 E호 현관출입문만 촬영하고 있었던 점, 해당 CCTV는 피고인이 그 원룸에 이사오고 나서 임대인이자 관리인이던 피해자측과 집 밖에 짐을 놓아두는 문제로 다툼이 있고 나서부터 설치되었던 점, 피해자측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새 거주자인 피고인이 문제를 일으킬까 염려되었고 또 피고인이 집 밖에 놓아두었던 짐을 피해자측에서 만졌다고 난



리를 칠까봐 염려되어 CCTV를 설치하게 된 것이었다고 설명하고 있는 점(증거목록 순번 9번의 사법경찰관 작성의 C에 대한 진술조서, 증거기록 118쪽-119쪽) 등에 비추어 보면, 해당 원룸을 관리하며 임대를 하고 있던 피해자측에서는 새로운 세입자인 피고인의 행동을 감시·촬영하기 위하여 해당 CCTV를 설치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아니더라도(해당 원룸 전체의 안전 및 관리 등을 위한 목적이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느끼기에는 자신을 감시하기 위하여 해당 CCTV가 설치, 운용되고 있다고 믿을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또 관계 법령에 의하면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를 설치·운영하는 사람은 그 설치목적 등이 포함된 안내판을 설치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어야 했는데 이 사건 CCTV의 설치·운영에 있어서 그 같은 안내조치는 취해지지 않았고, 피고인에게 그에 대한 양해를 구하지도 않았다. 이 같은 상황 아래서 자신을 감시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피고인이 해당 CCTV의 카메라 각도만을 돌려 놓아 자신의 주 활동범위를 감시·촬영할 수 없도록 한 것은, 자구행위에 유사한 행위로 적어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라고 보아야 한다.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인정되기 위한 요건으로 대법원 판례(2003. 9. 26. 선고 2003도3000 판결 등)가 요구하는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긴급성, 보충성 등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는 경우라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 제20조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되어 별할 수 없는 것이어서 무죄로 보아야 하는데, 이와 달리 보아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정당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이를 주장하는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있다.

나. 절도죄에 대하여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3. 8. 3. 18:44경 위 원룸 옥상 옆 창고에 설치된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 250,000원 상당의 CCTV 저장기기에 연결되어 있는 전선을 탈착한 후 그 저장기기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2023. 8. 3. 오후에 옥상 옆 창고에 설치된 CCTV 모니터와 셋탑박스(저장기기)를 우연히 발견하고 더 이상 녹화 및 저장이 되지 않도록 셋탑박스에 연결된 전선을 피고인이 뽑아 둔 사실은 있으나(항소심 제2회 공판기일에 피고인의 법정에서의 진술, 사법경찰관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중 증거기록 183쪽의 진술), 셋탑박스를 가져가지는 않았다. 따라서 피고인이 셋탑박스를 가져가 절취하였다는 공소사실은 잘못된 것이고 피고인은 무죄이다.

3) 판단

사법경찰관 작성의 피해자 C에 대한 진술조서(2회, 증거목록 순번 24번 증거)에 기재된 위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증거기록 120쪽-122쪽), 옥상의 창고에 설치되어 있던 셋탑박스가 없어졌고, 피고인이 가져간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기는 하다. 그리고 피해자측에서 제출한 CCTV 영상이 담겨있는 CD와 그를 분석한 사법경찰관 작성의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28번, 29번, 30번 증거)에 의하면, 저장장치에 2023. 8. 3. 16:55경까지의 CCTV 영상만이 저장되었고, 이후 18:44경으로 갑자기 시간이 넘어가며, 그 때 피고인이 옥상 창고 내에서 허리를 숙여 무엇인가를 하다가 문을 닫고 나오는 모습이 나오고 그 이후로는 더 이상 녹화가 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또 위 수사보고서에서는, 그 같은 영상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8. 3. 16:55경에 옥상 창고에서 셋탑



박스에 연결된 전선을 일단 뽑아 더 이상 저장이 되지 않게 하였고, 이후 18:44경에 다시 옥상의 창고로 돌아와 셋탑박스 전선을 다시 연결하였다가 곧바로 전선을 뽑은 다음 셋탑박스를 들고 간 것(절취)으로 판단된다고 사건을 정리하고 있다. 이 같은 증거들 외에 피고인이 셋탑박스를 가져갔음을 알 수 있는 다른 직접적인 증거는 없다.

그런데 피고인이 제출한 USB(피고인 제출의 순번 1 증거)에 저장된 녹화 영상(피고인의 핸드폰으로 피고인이 촬영한 영상이다)에 의하면, 피고인이 문제의 원룸에서 이사 나온(2023. 8. 22. 이사한 것으로 보인다) 후인 2023. 9. 4.에 피고인이 경찰관 입회 아래 해당 원룸의 옥상 창고에서 문제의 셋탑박스를 찾아 경찰관에게 건네주고, 그 창고 앞에서 경찰관이 받아 이를 피해자측에게 넘겨주었음이 확인된다(피해자 B의 원심 증언 중에 피고인이 원룸에서 이사나간 후인 어느 날 경찰관을 통해 피해품인 셋탑박스를 반납했다는 내용이 있는데, 바로 이 부분을 두고 이야기한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피고인이 2023. 9. 4.에 옥상 창고에서 경찰관 입회하에 절취의 목적물로 되어 있는 셋탑박스를 어느 곳에서 꺼내어(찾아) 피해자에게 돌려주게 되었으므로, 이와 같이 반환되게 된 경위와 관련하여 추측해 볼 수 있는 가능한 경우의 수는 다음의 3가지이다. ①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23. 8. 3. 18:44경에 모니터와 분리된 셋탑박스를 옥상 창고 밖으로 반출하여 가져갔다가(절취), 이후 어느 때에 이를 다시 옥상 창고로 가져와 자신만이 아는 장소에 숨겨 두었고, 이후 2023. 9. 4.에 경찰관에게 연락하여 경찰관 입회 아래 옥상 창고에서 이를 꺼내, 마치 피해자측에서 숨겨둔 것을 피고인이 발견한 것처럼 연기하면서 경찰관에게 넘겨준 경우이다. ② 피고인이 2023. 8. 3. 18:44경에 모니터와 셋탑박스를 분리한 다음 이를 바로 옥상 창고 어딘가에 숨겨 두었고, 이후 2023. 9. 4.에 경찰관에게 연락하여 위 ①과 같이 연기하면서 경찰관에게



넘겨준 경우이다. ③ 2023. 8. 3. 18:44경에 피고인이 옥상 창고에 들어가 피고인의 주장처럼 모니터와 셋탑박스를 연결하는 전선만을 분리하여 셋탑박스가 기능을 하지 못하도록 해 두었을 뿐인데, 피해자측에서 셋탑박스를 창고 어딘가에 숨겨두고는 경찰에는 도난당한 것처럼 신고하였고, 이후 2023. 9. 4.에 피고인이 경찰관 입회 하에 옥상 창고를 수색하다가 이를 발견하게 된 경우이다. 그 중 ①의 경우는, 피해자들이 관리하는 옥상 창고가 보통의 경우에는 문이 잠겨져 있어 피고인이 그곳에 쉽게 들어갈 수 없는 상태였고, 때문에 피고인이 8. 3.에 창고 밖으로 들고 나갔던 셋탑박스를 이후 어느 때에 창고 안으로 다시 가져와 이를 숨겨두기는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므로 가능성이 적다. ③의 경우도 피해자들이 없는 사실을 만들어 피고인을 무고했으리라고 보기는 어렵고, 또 피해자들이 숨겨둔 셋탑박스를 피고인이 것처럼 우연히 발견하기도 극히 어려운 것이므로(피해자들이 피고인을 무고하고자 했다면 셋탑박스를 굳이 옥상 창고 어딘가에 숨겨둘 이유도 없다) 이 역시 가능성이 극히 적다. 여러 정황에 비추어 본다면 ②의 경우가 가장 합리적인 설명이 되는 경우이다. 그런데 옥상의 창고는 피해자들이 관리하는 장소였으므로, 비록 피고인이 셋탑박스를 모니터와 분리하여 옥상의 창고 어딘가 자신만이 아는 곳(그곳에 있던 물건들 사이 어느 곳)에 숨겨두었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피해자들의 점유 하에 있는 상태였다고 보아야 하고, 이를 두고 피고인이 자신의 지배 아래로 셋탑박스의 점유를 이전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즉, 이 경우에는 셋탑박스가 정상적으로 기능을 할 수 없도록 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으므로 재물손괴죄에는 해당할 것이나, 그 점유가 피고인에게 이전된 것은 아니므로 절도죄에는 해당할 수 없는 것이다. 결국, 피고인에게 절도죄가 인정될 수 있기 위해서는 위 ①의 경우여만 될 것인데, 앞서 본 것처럼 그 가능성은 적고 이를 인정할 증거들도 없으므로, 이



부분 절도죄의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인데도 이와 달리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부분 피고인의 항소도 이유 있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고, 원심판결은 전부 파기하여야 한다. 이에 형사소송법 제 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와 피해자 C이 소유 및 관리하는 경주시 D 원룸 E호 임차인이다. 피고인은 위 E호에 이사를 오면서 그곳에 이삿짐을 둘 공간이 부족해지자 이삿짐의 일부를 공용계단에 놓아두었고, 피해자 B로부터 "이사 비용을 줄테니 다른 큰 원룸을 찾아보는 것이 어떠냐?"라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 대한 앙심을 품게 되었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3. 7. 19. 21:55경 위 원룸 5층 공용계단을 비추도록 설치된 피해자들 소유인 각 시가 미상의 CCTV 카메라 및 옥상 앞에 설치된 CCTV 카메라의 각도를 손으로 임의로 변경하여 CCTV 카메라의 감시 기능을 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같은 해 8. 2. 18:56경까지 별지 별지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위 카메라들의 각도를 손으로 임의로 변경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23. 8. 3. 18:44경 위 원룸 옥상 옆 창고에 설치된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 250,000원 상당의 CCTV 저장기기에 연결되어 있는 전선을 탈착한 후 이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 판단

앞서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서 본 것처럼,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재물손괴의 점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아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로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절도의 점은 범죄사실의 증거가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성수 _____

 판사 남근욱 _____

 판사 김정도 _____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5-12-30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일시 및 장소	범죄사실	피해 카메라	증거자료	비고
1		원룸에 설치된 CCTV 카메라의 각도를 손으로 변경	5층, 옥상 앞	CCTV 영상	
2		위와 같음	5층	CCTV 영상	
3		위와 같음	5층	CCTV 영상	
4		위와 같음	5층	CCTV 영상	
5		위와 같음	5층	CCTV 영상	
6		위와 같음	5층	CCTV 영상	
7		위와 같음	옥상 앞	CCTV 영상	
8		위와 같음	5층, 옥상 앞	CCTV 영상	
9		위와 같음	5층, 옥상 앞	CCTV 영상	
10		위와 같음	5층	CCTV 영상	
11		위와 같음	옥상 앞	CCTV 영상	